[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26. 3. 20.>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 ]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평가방법 (합병법인의 당초 평가방법)	변경 평가방법
	[ ] 개별법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 시가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화폐성외화자산등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